

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2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면제합니다.

- 상 호 명:
- 대 표 자:
- 사업장 주소:
- 대상 건축자재: [] 접착제, [] 페인트, [] 실란트(sealant),
[] 퍼티(putty), [] 벽지, [] 바닥재, []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
- 면제 제품명:
- 유효기간:

시 험 기 관 의 장

직인